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♦♦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수표금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피고는 다음 기재내용와 같은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발행인입니다.
  - 당좌수표의 내용 -
    - (1) 발행일 : 20 ○ . .
    - (2) 발행지 : 〇〇〇

www.kidc.or.kr// control kr// c

(3) 지급지 : ○○은행 ○○지점

(4) 액면 : 금 10,000,000원

(5) 수표번호 : 가라78762590

- 2. 원고는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20〇〇. 〇〇. 〇. 지급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, 지급거절 되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액면 금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당좌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한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 당좌수표 앞면, 뒷면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ㅇㅇ지방법원 귀중

	T	I	9.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<b>^^^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 : ㅇㅇㅇ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	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		
	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		
	하는 증권이므로,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		
	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		
	야 하는 것은 아님(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6다52205 판결).		
	·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		
	제시를 하여야 하고(수표법 제29조 제1항, 제4항), 수표는 그 제시기간		
	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		
	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표발행인에 대하여		
	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(대법원 1974. 7. 26. 선고 73다1922		
	파결).		
		을 할 때에 소지	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
	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(수표법 제34조 제1항).		
	•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①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. ②제시		
	일 이후의 연 6%의 이율에 의한 이자, ③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		
	교 이우의 한 0%의 이율에 의한 이자, ©가실장자 또는 이와 장말인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		
	있음(수표법 제44조).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어음·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9조)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